

중장년기본법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693
----------	-------

발의연월일 : 2026. 8. 21.

발 의 자 : 박주민 · 최민희 · 강준현
전현희 · 권향엽 · 박정현
김준혁 · 이주희 · 김영환
서미화 · 장종태 · 남인순
의원(12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전체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장년(40세 이상 65세 미만)은 국가 경제와 사회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중장년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경제적 주체로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 불안정과 조기 퇴직, 노후 준비 미흡 등 다양한 생애 전환기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중장년 관련 정책이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이 법을 제정하여 중장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중장년의 권리를 규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중장년정책 추진 체계와 분야별 지원 시책 및 전담 지원 기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른 노후준비 지원 정책과의 연계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중장년이 생애 전반에 걸쳐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모든 영역에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장년이 경제적 주체이자 사회의 핵심 구성원으로서 경험과 역량을 존중받으며 경제적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규정하고, 고용·교육·사회참여 등 모든 분야에서 평등한 기회 보장 및 세대 간 연결과 사회 발전 기여 문화 형성 등을 고려 사항으로 명시함(안 제2조).

나. 중장년을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되,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중장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다. 중장년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중장년의 권리를 선언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중장년정책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함(안 제6조).

마. 국무총리는 5년마다 중장년정책의 기본방향, 추진목표, 성과지표 및 데이터 연계·활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추진실적을 매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국무총리는 분석·평가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지정 기준 위반 시 시정명령 또는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8조).

사. 정부는 3년마다 중장년의 고용·주거·건강·금융상태·디지털 역량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하도록 함(안 제10조).

아. 중장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장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되, 민간위원 위촉 시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함(안 제11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장년의 생애전환설계 및 개발 지원, 고용안정 및 일자리 지원, 중장년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권익 보호 및 사회적 인식 개선,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건강증진 및 심리 지원, 가족돌봄 부담 경감 지원, 사회참여 및 지역사회 기여 활성화 등 중장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

차. 국무총리는 중장년정책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 정보 공유,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중장년의 사회공헌 활동 연계 등을 위하여 중장년정책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 카. 중장년정책의 효율적인 수행과 중장년의 복지 증진 및 고용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중장년미래설계원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설계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무총리의 인가를 받도록 하며, 국무총리는 필요한 경우 설계원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감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 타. 시·도지사는 중장년에 대한 맞춤형 생애전환설계 및 재도약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장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설계원이 센터의 운영을 총괄·지원하도록 함(안 제22조).
- 파. 국무총리는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확정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고, 매년 주요 중장년정책의 수립·추진실적 및 중장년 실태조사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23조).
- 하. 한국중장년미래설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5조 및 제27조).

중장년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장년의 권리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장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중장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중장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이 법은 중장년이 경제적 주체이자 사회의 핵심 구성원으로서 그 경험과 역량을 존중받으며 경제적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중장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중장년의 생애전환설계와 지속적인 역량 개발
2. 고용·교육·사회참여 등 모든 분야에서 중장년에 대한 평등한 기회 보장
3. 중장년이 안정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마련
4. 중장년의 경험과 지식이 세대 간 연결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문화 형성

5. 중장년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지역사회 기여 촉진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장년”이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중장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중장년정책”이란 중장년의 고용 촉진, 생애전환설계 및 개발, 복지 향상 및 권익 보호 등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중장년지원”이란 중장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장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4. “생애전환설계”란 중장년이 자신의 경험·역량 및 적성 등을 바탕으로 퇴직 이후를 포함한 생애 전반에 걸쳐 직업·경력·학습·건강·사회적 관계·돌봄·사회참여 등 삶의 전반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말한다.
5. “중장년단체”란 중장년정책의 발전, 중장년지원 또는 중장년의 사회참여 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장년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장년정책 수립 절차에 중장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

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장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5조(중장년의 권리) ① 중장년의 기본권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② 중장년은 고용·교육 및 사회참여 등에서 연령을 이유로 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③ 중장년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장년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④ 중장년은 중장년정책 및 중장년지원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⑤ 중장년은 생애전환설계 및 경력 전환에 관한 지원을 받고, 평생 학습·사회참여와 안정적인 노후 준비의 기회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중장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중장년정책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중장년정책 기본계획 등

제7조(중장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무총리는 5년마다 중장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년정책의 기본방향
 2. 중장년정책의 추진목표
 3. 중장년정책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
 4.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5. 중장년정책에 관한 기능의 조정
 6. 중장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7. 중장년정책의 성과지표 및 평가 기준
 8. 중장년정책 관련 데이터의 수집·연계·활용에 관한 사항
 9. 중장년의 특성 및 생애주기에 따른 대상별 맞춤형 시책에 관한 사항
 10. 중장년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사회적 고립 예방에 관한 시책
 11. 제20조에 따른 중장년정책 통합정보시스템, 제21조에 따른 한국 중장년미래설계원 및 제22조에 따른 중장년지원센터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중장년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제11조에 따른 중장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

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무총리는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11조에 따른 중장년정책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무총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를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평가를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을 중장년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이하

“분석·평가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⑥ 국무총리는 분석·평가지원기관이 지정 기준을 위반하면 그 지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⑦ 국무총리는 제6항에 따라 분석·평가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⑧ 국무총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분석·평가지원기관으로부터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분석·평가지원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지원 및 자문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⑨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제출, 추진실적의 제출 및 분석·평가, 분석·평가지원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① 국무총리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중장년 실태조사) ① 정부는 기본계획 등 효율적인 중장년정책

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중장년의 고용·주거·건강·금융상태·디지털 역량·사회참여·고립 정도·돌봄 부담·삶의 만족도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중장년정책의 총괄·조정

제11조(중장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중장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장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중장년정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중장년정책의 분석·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중장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중장년정책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중장년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교육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성평등가족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중장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중장년 단체의 대표 등 중장년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4항제3호의 위원 중 기관·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제4항제3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사무국을 둔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실무위원회·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무국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중장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제12조(생애전환설계 및 개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장년이 건강·사회적 관계·여가 및 경력 등 생애 전반에 걸친 삶을 설계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훈련, 취업·창업 지원, 경력 전환 지원 및 「노후준비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노후준비서비스 등 관련 서비스와의 연계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장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에 도달한 경우 생애전환설계 및 중장년지원에 관한 정보를 미리 안내

· 제공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안내·제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성명·연령·주소 및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안내·제공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고용안정 및 일자리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장년의 고용안정과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중장년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2. 중장년의 직무 재설계 및 작업환경 개선 지원
3. 중장년 적합 일자리 발굴 및 취업 연계 지원
4. 중장년 창업 지원 및 창업 모델 발굴
5.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중장년 사회공헌 일자리 발굴 및 연계 지원
6. 재직 중인 중장년이 퇴직 전에 미리 경력 전환 등 생애전환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상담·교육 등의 지원
7. 중장년 대상 재취업·전직 등을 위한 교육·훈련의 품질기준 마련 및 관리
8. 그 밖에 중장년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의 세부 내용·지원 대상·지원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중장년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① 사업주는 중장년의 고용안정과 지속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유연근무 등 다양한 근로형태의 수용, 직무 재설계, 직업능력 개발 및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등 중장년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권익 보호 및 사회적 인식 개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장년의 권익 보호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고용 등에서 연령을 이유로 한 중장년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의 예방 및 시정
2. 중장년의 경험과 역량이 사회적으로 존중되는 문화 형성을 위한 교육·홍보
3. 중장년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인증 및 표창
4. 그 밖에 중장년의 권익 보호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장년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활용 역량 및 사이버 보

안 인식 등을 포함한 디지털 교육·훈련 등 역량 강화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대책을 시행할 때에는 중장년의 디지털 접근성과 활용 수준을 고려하여 수준별 맞춤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디지털 역량 강화의 세부 내용·수준별 교육과정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건강증진 및 심리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장년의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확대 및 질병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장년의 심리적 안정, 정신건강 증진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하여 상담·치료 지원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가족돌봄 부담 경감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장년이 부모·자녀 등 가족구성원에 대한 돌봄(이하 이 조에서 “가족돌봄”이라 한다)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지속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가족돌봄을 수행하는 중장년에 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2. 가족돌봄 관련 서비스 및 기관과의 연계 지원
3. 가족돌봄과 경제활동·사회참여의 병행을 위한 지원
4. 그 밖에 가족돌봄으로 인한 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책의 대상·내용 및 지원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중장년의 사회참여 및 지역사회 기여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장년의 사회참여와 지역사회 기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중장년의 자원봉사·멘토링 등 사회공헌 활동 지원
2. 중장년과 청년 등 다른 세대 간의 교류 및 협력 지원
3. 지역사회 돌봄 활동에 중장년이 참여할 수 있는 경로 마련
4. 중장년의 공동체 활동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5. 그 밖에 중장년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시행할 때에는 민간 기업·사회적경제단체 등과의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는 중장년에 대하여 교육·건강증진 등에 관한 지원을 우대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책의 대상·내용·지원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장 중장년정책 추진기반 구축

제20조(중장년정책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국무총리는 중장년정책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 정보 공유,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중장년의 사회공헌 활동 연계 등을 위하여 중장년정책 통합정보 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국무총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무총리는 통합정보시스템을 「노후준비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구축·운영되는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국무총리는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제21조에 따른 한국중장년미래설계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⑤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업무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한국중장년미래설계원의 설립 등) ① 중장년정책의 효율적인 수행과 중장년의 복지 증진 및 고용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중장년미래설계원(이하 “설계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설계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설계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설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

다.

⑤ 설계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 설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중장년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
2. 중장년 적합 직종 발굴, 창업 지원 및 일자리 지원 사업
3. 중장년 교육 및 전직 지원 서비스 개발
4. 중장년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콘텐츠 보급
5.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6. 제22조에 따른 중장년지원센터의 운영 총괄 및 역량 강화 지원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는 중장년 관련 사업
8. 그 밖에 중장년정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⑦ 설계원은 제6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때 「노후준비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단체와 연계·협력하여야 한다.

⑧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설계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설계원에 파견할 수 있다.

⑨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계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⑩ 설계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⑪ 국무총리는 필요한 경우 설계원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감사할 수 있다.

제22조(중장년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는 중장년에 대한 맞춤형 생애전환설계 및 재도약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장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장년에 대한 생애전환설계 상담 및 정보 제공
2. 중장년의 취업·창업 지원
3. 중장년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운영
4. 중장년의 건강증진 및 심리 상담 연계
5. 중장년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수준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6. 중장년의 공동체 활동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7. 그 밖에 중장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운영을 설계원 또는 중장년정책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설계원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총괄·지원하고, 지원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지원센터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 「노후준비 지원법」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단체와 연계·협력하여야 한다.

- ⑥ 시·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⑦ 시·도지사는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때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농산어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농산어촌을 말한다) 등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 ⑧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23조(국회 제출) ① 국무총리는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확정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매년 주요 중장년정책의 수립·추진실적 및 중장년 실태조사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국무총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그 업무의 일부를 중장년정책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장년정책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한국중장년미래설계원이 아닌 자는 한국중장년미래설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1조에 따른 중장년정책조정위원회·실무위원회·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21조에 따른 설계원의 임직원
3. 제24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중장년정책 관련 전문기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제7장 벌칙

제27조(과태료) 제25조를 위반하여 한국중장년미래설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중장년미래설계원의 설립준비) ① 국무총리는 설계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5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한국중장년미래설계원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설계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국무총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설립 당시의 설계원의 임원은 설립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설계원의 임원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설계원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5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 설계원의 설립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